

# 인천교통공사 직무능력중심 신입사원 채용공고

2026년 인천교통공사 직무능력중심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인천교통공사인사위원회 위원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단위 : 명)

채용 직급	채용분야		계	모집단위				직 무 기술서		
				인천			전국			
				일반전형		장애인 전형	보훈 일반전형		전국 일반전형	
				공개경쟁	제한경쟁					제한경쟁
9급	계		91	40	35	8	6	2		
	사무	사무	8	4		3	1		직무기술서	
		역무안전	7		7				직무기술서	
	전기전자	전기	9	7		1	1		직무기술서	
		신호	5	3		1	1		직무기술서	
		통신	7	5		1	1		직무기술서	
		전자	10	8		1	1		직무기술서	
	시설환경	토목		8	6		1	1		직무기술서
		기계설비	기계설비(기계)	2	2					직무기술서
			기계설비(전기)	8		8				
	차량	차량(기계)		2	2					
		차량(전기)		3	3					직무기술서
		차량2		2					2	
	승무		20		20					직무기술서

- ※ 모집단위별로 「인천」 과 「전국」 단위로 구분하여 전형 진행
- ※ 채용분야 및 모집단위 간 중복지원 불가
- ※ 일반전형(제한경쟁\_사무(역무안전), 차량2, 승무)는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모집
- ※ 일반전형(제한경쟁\_기계설비(전기))는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모집
- ※ 기계설비(전기) 전형에 대해 합격인원 미달 시 또는 예비합격자 소진 시 기계설비(기계) 전형에서 임용 예정
- ※ 차량(전기) 전형에 대해 합격인원 미달 시 또는 예비합격자 소진 시 차량(기계) 전형에서 임용 예정
- ※ 장애인, 보훈일반 전형 예비합격자 별도로 운영
- ※ 사무(역무안전) 채용분야는 임용 후 공사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승무분야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 채용분야 및 변경사유 발생 시 시험기일 7일전까지 수정공고 예정

## 2.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구 분	응시자격
연 령	▶ 18세 이상자(2008.12.31. 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학 력	▶ 제한 없음
병 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거주지	<p>▶ 「인천」과 「전국」 단위로 구분하여 응모</p> <p>- 인천지역 대상으로 지원하는 응시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p> <p>1. 2026.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p> <p>2. 2026. 1. 1.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p> </div> <p>▶ 유의사항</p> <p>-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초본)"를 기준으로 함.</p> <p>-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p> <p>-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b>【월(月) 단위 계산방법】</b></p> <p>1월을 모두 거주한 경우 해당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 인정, 1월 미만의 일수는 따로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환산하며 잔여일수는 불인정</p> </div>
근무조건	<p>▶ 주·야간 교대(교번) 근무 가능자</p> <p>-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p>
응시제한	<p>▶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에 한함</p> <p>-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자</p> <p>- 철도안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사무(역무안전), 신호, 차량2, 승무 채용 분야 응시자에 한함)</p>

## 나. 제한경쟁분야

구 분	응시자격
공통사항	▶ 자격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사무(역무안전), 차량2, 승무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기계설비(전기)	▶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및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모집직종 관련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보 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모집직종 관련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2026. 6. 15.(월) ~ 6. 23.(화)	온라인 접수(채용 홈페이지)
서류전형 적격자 발표	2026. 7. 7.(화)	채용홈페이지 공고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b>2026. 7. 11.(토)</b>	서류전형 적격자 해당
가산점 적용(검증)결과 사전 공개	2026. 7. 14.(화)	채용홈페이지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성검사 결과 포함)	2026. 7. 29.(수)	채용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b>2026. 8. 4.(화) ~ 8. 6.(목)</b>	필기시험 합격자이면서 인성검사 적격자 해당
최종 합격자 발표	<b>2026. 8. 14.(금)</b>	채용 홈페이지 공고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 시험장소 공고 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용이 불가합니다.

## 4. 입사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가. 접수기간 : 2026. 6. 15.(월) 09:00 ~ 6. 23.(화) 10:00

나.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scout.co.kr>)

다. 접수방법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연령, 학력, 학교명, 출신지역, 부모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제출대상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li> <li>▶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li> <li>▶ 기타 불필요한 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li> </ul>	-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li> <li>▶ 인천지역 응시자의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전·출입 내역 및 개명 시 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li> <li>※ <b>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다른 서류이며, 제출서류 목록의 오제출 시 불인정</b></li> <li>※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열람용” 불인정하며 부적격 처리</li> </ul>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li> <li>▶ 국가보훈부(지방보훈지청) 발급</li> </ul>	해당자
장애인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li> <li>▶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중 1부</li> </ul>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점 적용 대상(붙임 3) 참조</li> <li>▶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li> <li>※ “시험합격확인서” 불인정</li> <li>※ “상장형 자격증”은 공고일 이후 출력분에 한해서만 인정</li> </ul>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li> </ul>	
청렴이행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li> </ul>	공통

**마. 서류 제출방법 (※ 별첨 「증빙서류 제출 가이드」 참조)**

※ 公社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 제출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되, 여러 파일인 경우 하나의 파일 또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채용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취득(결정)된 것만 인정됩니다.

**바. 서류심사 부적격자 기준**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자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 안되는 경우
- ※ 입사지원서에 가산점 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하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은 가산점만 미인정

**사. 자기소개서 평가기준 및 활용**

-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 붙임6 참조)

구분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오기재</li> <li>-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지원서 작성</li> <li>- 자기소개서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 의미없는 문자숫자기호 등을 반복하여 기재</li> <li>- 자기소개서 2개 문항 이상 동일내용으로 작성</li> <li>- 표절검사 결과 전체 표절률 30%이상 또는 항목별 표절률 50%이상인 경우</li> </ul>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출신학교/성별/가족 및 친인척 재직정보 등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1건 이상 등</li> </ul>

- **평가결과** : 자기소개서 평가는 서류심사 적부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며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위원에게 평가결과 제공)

**아. 가산점 적용(검증)결과 사전공개**

- **공개기간** : 2026. 7. 14.(화)
- **공개방법**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해 채용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 가산점 적용(검증) 결과
- **이의신청 접수** : 채용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 접수 및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 **접수결과 통보** : "가산점 반영여부"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가산점 우대사항 진위확인은 관계기관 및 발급기관의 진위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반영하며, 우리공사는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자가 오기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점 이의신청 기간에도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가산점은 아래 요건 중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① 입사지원서에 가산점 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하는 경우
  - ② 제출서류가 공사 서류제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③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확인 불가능하여 진위확인 되지 않는 경우
- 위 가산점 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가산점으로 미인정됩니다.

**5. 필기시험**

가. 응시대상 : 서류전형 적격자

나. 시험과목(배점) : 2과목(과목별 100점 총 200점, 80문항)

채용분야		시험과목 및 배점	
		선택 1과목 (100점, 40문항)	필수 1과목 (100점, 40문항)
사무	사무, 직무안전	행정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법학개론, 통계학개론, 전산학개론, 전자일반 중 택 1	직업기초 능력평가
전기전자	전기	전기이론	
	신호	전기이론, 전자일반, 통신일반 중 택 1	
	통신	통신일반	
	전자	전자일반	
시설환경	토목	토목일반(궤도일반 포함)	
	기계	기계일반	
	설비	전기이론	
차량	차량(기계)	기계일반	
	차량(전기)	전기이론	
	차량2	기계일반, 전기이론 중 택 1	
승무		기계일반, 전기이론, 전자일반 중 택 1	

-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분야별 평가영역

채용분야	직업기초능력평가 평가영역
사무(사무, 직무안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전기전자(전기, 신호, 통신, 전자), 시설환경(토목, 기계설비(기계, 전기)), 차량(기계, 전기, 차량2)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승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다. 필기시험 합격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소수점 미만 자리는 버림)

#### 라.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등으로 인해 적격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 6. 인성검사

가. 검사기관 : 외부 전문기관 위탁 진행

나. 검사방법 : 필기시험 당일 오프라인으로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및 직무적합도 측정  
(성인지감수성 검사항목 포함)

라. 검사결과 : 인성검사 판별기준에 의해 판정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

#### 마. 적격자 기준

- 응답신뢰도 "양호" 이상과 종합등급 "C" 이상 (두가지 측정기준 모두 충족)
  -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필기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 측정기준 및 적격기준 등 별도 안내 예정

## 7. 면접시험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이면서 인성검사 적격자

#### 나. 평정요소

- ※ PT면접은 면접시험 당일 부여되는 지원분야별 주제에 따라 개인별 작성 및 발표  
→ 개인별 작성방법 및 시간, 발표방법 및 시간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

집단 대면면접 (50점 만점) ⇒ 품행, 예의, 전문지식, 발표력 등 평가	PT면접 (50점 만점) ⇒ 지원분야 직무능력과 관련된 지식 등 평가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 (10점)	분석적 사고 (10점)
일반.전문지식.응용능력 (10점)	문제해결 능력 (10점)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10점)	기획능력 (10점)
사회성, 발전가능성, 리더십 (10점)	실무지식 (10점)
고객지향성, 화합능력 (10점)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능력 (10점)

#### 다. 합격자 결정

- 면접 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집단 대면면접 평균점수, PT면접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만점(100점)의 50% 이상인 사람 선발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 이하로 평가한 경우 탈락 처리

### 8.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선발

#### 가.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동점자 순위결정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전공과목 점수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고득점자, 면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 PT면접 점수 고득점자, 집단대면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함.

#### 나. 예비합격자 선발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자 중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아래와 같이 선발하며, 선발된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임용 예정

모집 단위	계	사무		전기	신호	통신	전자	토목	기계설비		차량		승무	
		사무	역무 안전						기계	전기	기계	전기		차량2
일반전형	77	4	7	7	3	5	8	6	2	8	2	3	2	20
장애인전형	8	3		1	1	1	1	1						
보훈일반전형	6	1		1	1	1	1	1						

※ 장애인 전형, 보훈일반 전형에 대해 예비합격자를 별도로 운영하며, 합격인원 미달 시 또는 예비합격자 소진 시 모집단위 동일분야 일반전형 예비합격자 중에서 상기의 기준으로 임용 예정

※ 기계설비(전기), 차량(전기) 전형에 대해 합격인원 미달 시 또는 예비합격자 소진 시 기계설비(기계), 차량(기계) 전형에서 임용 예정

※ 예비합격자 동점자 순위결정은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 9.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가. 검사대상 : 최종합격자 전원

## 나. 신체검사

-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등록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2026년) **정상** 판정 시
  - ② 일반 채용신체검사 결과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 가능** 판정 시
- 다만, 사무(역무안전), 신호, 차량2, 승무 채용분야는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자
- 신체검사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합격자 선결제 후 공사 지급)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 취소 및 임용대상에서 제외**

## 다. 결격사유 조회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같은 법 제1항 제3호(직원의 결격사유) 등 해당여부 조회·확인
-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시 최종합격 취소 및 임용대상에서 제외**

# 10. 가산점 적용

## 가. 가산대상 및 비율

구분	가산 대상 자격	가산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자격증 소지자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5%	필기시험(선택과목) 만점의 3% 또는 5%
	- 산업기사 이상	5%	
	-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사(도시철도 포함)	3%	

## 나. 가산점 적용 방법

###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제한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자격증 소지자

- 분야별 해당 자격증(붙임 3) 소지자로 선택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자격증 중복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은 사무분야에 한하여 가산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는 전기, 신호, 토목, 차량(기계, 전기) 분야에 한하여 가산

## 다.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은 중복 적용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사 소지자 가산은 타 자격증 소지자 가산과 중복 적용하되,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와 철도교통관제사 소지자 간의 가산은 중복 적용 불가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11. 유의사항

가. 모집단위 및 채용 분야(사무(사무, 역무안전), 전기, 신호, 통신, 전자, 토목, 기계 설비(기계, 전기), 차량(기계, 전기, 차량2), 승무)별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나.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오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우리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채용분야별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우선 임용합니다.

※ 사무(역무안전) 채용분야의 경우 임용 후 실승훈련(구간인증) 및 승무 업무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임용순위는 채용시험 성적 순으로 하되 임용후보자 양성교육을 시행할 경우에는 교육수료성적 순으로 합니다.

마.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불가하며,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바. 사무(역무안전), 차량2, 승무 채용분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까지 유효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사. 임용 후 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자.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scout.co.kr>) 내 "이의제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붙임 4)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붙임 5)

타. 채용과정 중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 채용문의 콜센터 ☎ 02-2188-6883

- 기타문의 : 총무인사팀 ☎ 032-451-2072

☎ 032-451-2073

##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 응시 결격사유

#### ○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 철도안전법 제11조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붙임 2)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가. 일반 결함	1)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2)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 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나. 코·구강·인후 계통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다. 피부 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라. 흉부 질환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2)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마. 순환기 계통	1) 심부전증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3) 심한 방실전도장애 4) 심한 동맥류 5) 유착성 심낭염 6) 폐성심 7)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바. 소화기 계통	1)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2)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3) 거대결장, 계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사.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성 신장염</li> <li>2) 중증 요실금</li> <li>3) 만성 신우염</li> <li>4)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li> <li>5)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li> <li>6) 고도의 요도협착</li> <li>7)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li> <li>8)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li> </ol>
아. 내분비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li> <li>2)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li> <li>3) 애디슨병</li> <li>4)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li> <li>5)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li> </ol>
자. 혈액이나 조혈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혈우병</li> <li>2)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li> <li>3)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li> <li>4)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li> <li>5) 진성적혈구 과다증</li> <li>6) 백혈병</li> </ol>
차. 신경 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앓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li> <li>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li> <li>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li> <li>4) 머리뼈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li> <li>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li> <li>6)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li> <li>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li> <li>8)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li> </ol>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카. 사지	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 난치의 뼈·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타. 귀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 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파. 눈	1)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하. 정신 계통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붙임 3)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채용분야전부 (공 통)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철도교통관제사(도시철도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1급(사무, 역무안전 응시자),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전기, 신호, 토목, 차량(기계, 전기) 응시자)					
사 무	교통		교통	교통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전자 (전기, 신호, 통신, 전자)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응용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카드
			메카트로닉스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설비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전자 (전기, 신호, 통신, 전자)			산업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시설환경 (토목, 기계설비 (기계, 전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방수	방수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보선	철도보선	보선
					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도시계획		도시계획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시설환경 (토목, 기계설비 (기계, 전기))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연삭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배관		배관	배관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온실가스관리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차량(기계), 차량(전기), 차량2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연삭 공유압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전자부품장착	기계정비 전자부품장착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배관 전기		배관 전기	배관 전기
	전기응용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설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차량(기계), 차량(전기), 차량2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승 무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카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응용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승 무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안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통폐합 포함)은 인정, 단 가산 자격증에 해당해야 함.

붙임 4)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 편의지원 항목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항목	
지체 장애	상지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뇌병변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시각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등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기타	임산부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p><b>대 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li> <li>·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li> </ul>
<p><b>기간 및 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지원 신청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li> <li>- 관련서류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li> </ul> </li> <li>·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편의지원 항목을 확인 후 입사지원서 및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내용 기재(채용홈페이지 신청)</li> <li>-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등)는 스캔하여 입사 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제출(등록)</li> </ul> </li> </ul>
<p><b>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li> <li>· 의사진단(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li> </ul> </li> <li>· 의사진단(소견)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li> <li>· 임산부의 경우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예시) 상기인은 임신 ( )주, 필기시험 예정일(0000.00.00)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li> <li>·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li> <li>· 확대문제지 등 : 확대문제지(118%, 150%), 축소문제지(82%), 확대답안지 (118%, 150%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li> <li>·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편의지원 신청서 서식

시험 분야		시험구분	<input type="checkbox"/> 필기시험 <input type="checkbox"/>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면접시험
성 명		응시번호	
출생월일		전화번호 (보호자는 필요시 기재)	응시자 : 보호자 :
주 소	□□□□□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시적 장애 등 <상제기술>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카드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상이부위 및 등급 확인 서류 <input type="checkbox"/> 의사 진단(소견)서		
편의 제공 요청 사항	문 제 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제지 (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50%) <input type="checkbox"/> 축소문제지 ( <input type="checkbox"/> 82%)	
	답 안 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대필 <input type="checkbox"/> 확대답안지 (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50%) <input type="checkbox"/> 아라비아 숫자 표기	
	시 험 실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별도 시험실	
	장애인 보조기구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명칭( )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필요사항 : )	
	기 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허용 <input type="checkbox"/>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 제공 <input type="checkbox"/> 인성검사 시 필요사항 ( ) <input type="checkbox"/>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	
※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통공사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붙임 6)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 및 블라인드 채용 준수를 위한 가이드 라인

- ❖ 인천교통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출신지역, 부모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 자기소개서는 AI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적부심사가 아닌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 지원자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위원에게 평가결과 제공)

### ○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오기재</li> <li>-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지원서 작성</li> <li>- 자기소개서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 의미없는 문자·숫자·기호 등을 반복하여 기재</li> <li>- 자기소개서 2개 문항 이상 동일 내용으로 작성</li> <li>- 표절검사 결과 전체 표절률 30% 이상 또는 항목별 표절률 50% 이상인 경우</li> </ul>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 출신학교 / 성별 / 가족 및 친인척 재직정보 등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1건 이상 등</li> </ul>

### ○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사항

구분	미준수 사항
성명	- 입사지원서의 성명 기재란을 제외하고 자기소개서 항목에 성명(성 또는 이름만 기재 포함)을 기재
학력	- 지원자의 출신 학교명을 기재 또는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성별	- 특정 성별이 드러나는 단어 및 문장으로 지원자의 성별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연령	- 지원자의 생년월일 및 연령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직접적인 연령을 기재
출신지역	- 지원자의 고향 및 거주지 등 출신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가족 및 친인척 관계	- 가족 또는 친인척의 특정회사 재직정도(과거 근무 정보 포함)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 ○ 직무경력 관련 처리 및 기타 유의사항

- 직무경력 : 경험·경력 기술 시 ○○공사, ○○전자, ○○연구원과 같이 입력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이메일 주소 입력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